

대학 등록금 운영 지침

제정 2013. 2. 1

개정 2015. 4. 1

개정 2017. 3. 1

개정 2018. 8. 30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등록금의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등록금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등록금 납부시기) ① 등록금의 징수기일은 대학의 총장이 별도로 정하되 해당학기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. 다만, 신입생 입학학기 등록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.

제3조(등록금 분할 납부) ①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는 학생에 한하여 분할납부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의 4분의 1이상을 납입기일에 납부하고, 미납액은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간 3회로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. 다만 분할 납부기간은 별도로 정하며 신입생은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.

② 분할납부자의 일반휴학, 군입대휴학은 4차분 완납 전까지는 휴학할 수 없다.

③ 학교가 정한 기한까지 분할납부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한다.

제4조(휴학 및 복학생의 등록금) ① 복학생의 등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자가 일반휴학을 할 경우

가. 등록학기 수업일수 1/2(8주)이후 3/4(12주) 이전 휴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의 1/2을 납입하여야 한다.

나. 등록학기 수업일수 3/4(12주)이후 휴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.

다. 등록학기 수업일수 1/2(8주)이전 휴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다.

2.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이 군입대 휴학을 할 경우

가. 등록학기 수업일수 3/4이후 휴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.

나. 등록학기 수업일수 3/4이전 휴학생은 복학 시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다.

3.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이 일반휴학에서 군휴학으로 변경한 경우 군휴학으로 인정한다.

② 등록 후 해당학기 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질병휴학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학기로 대체된다.

제5조(정규학기 초과자의 등록금) ① 정규학기 초과자의 등록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청학점이 1~3학점일 경우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/6을 납입하여야 한다.

2. 신청학점이 4~6학점일 경우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/3을 납입하여야 한다.
3. 신청학점이 7~9학점일 경우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/2을 납입하여야 한다.
4. 신청학점이 10학점 이상일 경우는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.

제6조 (전과학생의 등록금) ① 전과 허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전과가 허가된 학과(전공)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휴학자 중 등록금이 유효한 학생이 전과를 할 경우 등록금은 신청한 학기의 전출학과 등록금으로 대체되며, 학과(전공)간에 등록금 차액으로 인해 환불 및 추가수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과를 시행한 학기의 등록금을 적용한다.

제7조(등록금 반환) ①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.

1.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 된 금액 전액
 2.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
 3. 재적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
 4.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
 5. 본인의 질병·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할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
- ②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, 등록금(입학금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)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『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』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.
1.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의 전액 반환
 2.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등록금의 5/6 해당액 반환
 3.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/3 해당액 반환
 4.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1/2 해당액 반환
 5.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
- ③ 장학금수혜자에게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금 총액에서 장학금 수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②항에 의해 반환한다. 다만,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장학금 수혜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④ 분할납부한 학생의 등록금 반환은 제②항의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.
- ⑤ 결석 또는 징계사유 등의 이유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⑥ 반환금의 계산 시 10원 미만은 절사한다.

제8조(등록금 반환 기준일) ① 등록금 반환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.

1. 등록금을 납부한 당해 학기에 재학 중인 자가 자퇴하게 되는 경우: 자퇴일
2.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게 되는 경우: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

- 3.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한 후 자퇴하게 되는 경우: 자퇴일
- 4.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: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
- 5. <삭제>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